『文化財』 간행규정

[시행 2020. 7. 27.] [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106호, 2020. 7. 27., 일부개정.]

국립문화재연구소(연구기획과), 042-860-9167

제1조(학술지명)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관련 연구실적을 종합 정리하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와 발전적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술지를 발간,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, 그 명칭을 『문화재』(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)(이하 학술지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의 목적은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.

제3조(내용 및 체제) ① 본 학술지의 내용은 문화재에 관한 제분야와 직·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 등으로 한다.
② 각 연구논문에는 국문요약문과 영문요약문, 국문주제어, 영문주제어(Keywords)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에는 영문요약문 외에 분야별 관련 국가의 언어로 요약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4조(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)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마감 후 개최한다.
②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, 심사위원 선정, 기획논문 청탁과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편집위원장 1인, 편집위원 10인(학술지의 10개 분야별로 최소 1인씩) 이상, 편집간사 1인을 둔다. 편집위원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추천한 소속 학예연구관(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)으로 한다.
④ 편집위원은 고고, 미술, 전통건축, 보존과학, 자연, 무형문화재, 안전방재, 정책·법제, 문화재활용, 근대문화재 등 문화재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 연구에서 연구활동이 활발하고 학술 성과가 우수한 전문가로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
⑤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,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,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.
⑥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⑦ 편집위원은 문화재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.
⑧ 편집위원은 문화재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 보안서약서<서식 1호>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제5조(간행) ① 본 학술지는 매년 4회, 3월 30일, 6월 30일, 9월 30일, 12월 3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학술지의 권과 호는 연번(Annual Volume), 연호(Serial Number) 및 통권(Total Volume)으로 명기한다.
③ 게재물은 일반논문과 기획논문, 서평, 기고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.

제6조(원고투고)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·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.
②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도의 원고 투고 지침에 따른다.
③ 접수된 원고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"수정 후 게재"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
④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지 않으나, 미게재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⑤ 수정재심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8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.
⑥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투고를 금한다.

제7조(원고심사위원 위촉 및 활동)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매회 원고마감 후 익월 첫째 주 각 분야별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② 논문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분야의 연구자로 투고논문 1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.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.

③ 논문심사위원은 위촉 후 3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,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.
④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 수락 · 서약서<서식 2호> 및 심사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⑤ 논문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⑥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나,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은 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⑦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.
⑧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심사규정 및 절차)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 및 서평, 기고문은 학술지 심사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거쳐야 하며, 별도의 투고 원고 심사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저작권 및 권리행사)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되며, 저작권 양도 동의서<서식 3호>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② 저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으며,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, 저자의 소속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,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.

제10조(재사용 정책) ① 논문을 재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저작자의 이름,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.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.
2. 저작물을 변경하거나,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.

② 1항에 따른 공공누리(제4유형) 및 저작권 라이선스(CCL) 표기는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기해야 한다.

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, 학술지의 논문 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사항은 「문화재 연구윤리규정」에 따른다.

부칙 <제106호, 2020. 7. 27.>

제1조(시행일)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